

## 지방자치단체 미술장식품 설치의 개선방안

조정송\* · 이유직\*\*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밀양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Reforming the Adornment of Buildings in the Provinces

Cho, Jung-Song\* · Lee, Yoo-Jic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Miryang Nat'l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problems relating to the legislation and execution of adornment of buildings in the province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role and function of adornment of buildings in terms of public art. In order to do that, the related nation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and the local regulations and rules were analysed. In addition, the catalogues on the adornments of buildings that are managed by 31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gi-Province were also compared and analysed.

As a result of our survey,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reform of the adornments of buildings must be executed on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On the local level, the revision of regulations must occur simultaneously with the changes of national law and enforcement decrees. In many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re are quite a lot of discrepancies between their regulations and the upper law. Therefore, people can be confused regarding the sensitive problems such as the types of buildings that are required to display adornments and the proportion of the cost to the construction cost.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improvements to national laws are often delayed. For example, the updated national law requires committee members to be appointed on the basis of merit, the announcement of the deliberation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existing structures. Unfortunately,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law are not followed through on a local level.

Concerning national legisl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minimize these problems. First, the western concept of 'public art' must be imported to Korea and applied to future legislation regarding adornment of buildings. Second, the perception of the purpose of adornment of buildings must be changed from 'art promotion' to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Third, it is impractical to require private citizens to fund public works of art. Korea requires an organized federal funding system for the commission of public art, which is to be controlled by committee. Finally, the definition of public artwork must be enlarged to include a more broad range of art, such as landscape architecture. In addition, continuing care of existing public works of art must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strengthened.

*Key Words : Adornment of Buildings, Environmental Sculpture, Public Art, Legislative Reform*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도시환경 속에서 환경조형물의 수가 부쩍 증가하였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1957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1255점의 환경조형물 중에서 90%가 최근 10년 안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visitseoul.net 참조). 이러한 환경조형물들은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경관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 공간의 장소성(placeness)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많은 환경조형물들이 도리어 도시 환경을 해치는 공해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환경조형물이 지닌 본원적 가치를 우리나라의 환경조형물들이 적절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조형물은 환경이라는 '장소적 상황'과 조형물이라는 '예술적 속성'이 어우러진 복합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환경조형물은 여타 예술작품과는 달리 예술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공공미술(public art)의 하나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술성과 공공성의 어느 한 쪽의 비중이 강조되고 다른 한 쪽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다면 환경조형물은 필연적으로 논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1999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 설치된 '아마벨(amabel, 원제: 꽃이 피는 구조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일어난 일련의 논쟁들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미국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대표작가 중의 한 명인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다소 난해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포스코 센터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그 특이한 형태로 말미암아 철거의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성완경, 1999; 유석우, 1999).

환경조형물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 초에 일어난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작품인 '기울어진 호'(Tilted Arc, 그림 1 참조)의 철거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동 공간에 불과 했던 광장을 작품을 통해 사람들을 조각적 맥락(sculpture context)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작가의 세심한 창작의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형태가 부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대중들의 끊임없는 지적으로 말미암아 이 작품은 결국 철거되고 말았다(Storr, 1985; Senie, 1989; Kelly, 1996).

이처럼 환경조형물은 예술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환경조형물은 이에 덧붙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근원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규칙의 체계 속에서 미술장식품이란 이름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본래 환경조형물과 같은 공공미술은 공공의 자원으로, 공공의 장소에, 공공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제도는 개인의 자원으로, 개인 소유의 장소에, 공공을 위하여 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또한 '공공미술'이나 '환경조형물'이라 하지 못하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이라고 규정하는 태생적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장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우리나라 환경조형물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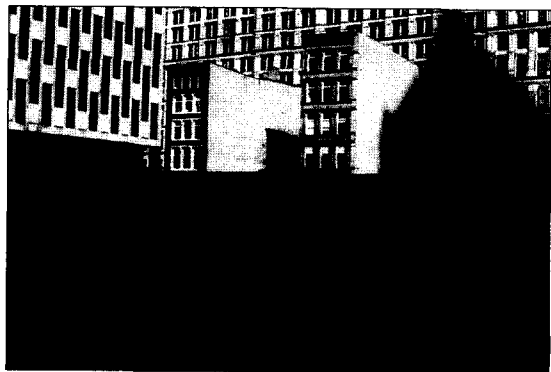


그림 1. Richard Serra, 기울어진 호, 1981, New York  
자료: 최병상, 1990: 333.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미술장식품의 제도적 현황과 조성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 진다. 먼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 속에 규정되어 있는 미술장식품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변화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주요 항목과 내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의 조항이 만들어진 2000년 10월 23일의 전문개정령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장식품 관련 조례와 규칙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상위법에서 위임한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용,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어떻게 지자체 문화예술진흥조례와 규칙 속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사례연구지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경기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45%에 달하는 인구 증가율을 보일 만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이로 인해 많은 미술장식품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실제로 조성되고 운용되고 있는 미술장식품의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현황 조사 분석은 경기도내 각 시·군별 미술장식품 관리대장에 올라있는 작품들 중에서 2001년 12월 1일까지 설치 완료된 미술장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설치연도 및 설치된 건물의 용도, 작품의 유형, 재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술장식품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II. 미술장식품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환경조형물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시설물의 출발은 1950년대 초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애국선열들의 동상건립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김도경, 1995). 그러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란 조항이 도입되면서부터였다(표 1 참조).

이 제도는 프랑스의 1%법(1951년)과 미국의 건축속의 미술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 Ai-A, 1953년) 등을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문화정책개발원, 1997), 도입초기에는 권장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강력한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4년 서울시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커다란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미술장식품 설치를 건축조례를

표 1.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련제도의 변화

초기 (1950년대 초~1972년)	미술장식품 제도의 도입기 (1972년~1984년)	건축제도를 통한 운용기 (1984년~1995년)		미술장식품 제도의 재정비 시기 (1995년~현재)
		설치의 의무화	설치 권장 전국적 시행	
-50년대초/제3공화국 : 애국선열 동상건립운동 및 민족기복화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1972년)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개념 도입, 건축비용의 1/100 이상 금액에서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	-서울시 건축조례 (1984년) :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 의무화 조항 신설 (1993년 조례 개정 시 권장 사항으로 바뀜)	-건축법 시행령 (1988년) : 미술장식 조항 신설, 전국적 시행 - 건축법 시행령 개정 (1992년) : 미술장식 설치 권장을 명시함	-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지자체 조례 순으로 체제정비 (1995년) : 건축관련제도에서는 관련조항 삭제됨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2000년) : 건축비용의 1/100 이란 용어 사라짐

통하여 의무화하면서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86년에 8건에 불과하던 서울시의 미술장식품 설치수가 1987년에는 10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문화체육부, 1993).

1988년 건축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미술장식품 제도는 건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다소 복잡한 체제로 운용되다가 1995년에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지

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의 체계로 일원화되었다. 현행 미술장식품 관련 조문은 1995년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에 전문개정을 통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주요 항목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 때 이루어진 개정의 특징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1%법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전까지 '건축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미술장식

표 2.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법(문화예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주요 항목	내 용	관련 조항
설치대상 건축물	- 건축물 용도 : ①공동주택(기숙사 제외), ②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사목, 아목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④판매 및 영업시설, ⑤의료시설 중 병원, ⑥업무시설, ⑦숙박시설, ⑧위락시설, ⑨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령 제24조 제1항
	- 건물의 크기 : 연면적 10,000㎡ 이상	령 제24조 제1항
건축주	- 건물의 종류 : 신축 및 증축	령 제24조 제2항
	- 건축주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법 제11조
미술장식 비용	- 미술장식 비용 :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령 제24조 제1항
	- 연면적 산정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 면적 제외	령 제24조 제1항
	- 건축비용 산정방식 1)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 건축비용 = 표준건축비 × 연면적 2)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표준건축비 × 95% × 연면적	령 제24조 제3항
	-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0.1% 이상 0.7% 이하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함	법 제11조 제2항 령 별표1의2
미술장식의 종류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1) 시, 군 이외의 지역 : (1) 연면적 1만㎡ 이상 2만㎡ 이하 : 건축비용의 0.7% (2) 연면적 2만㎡ 초과 : 연면적 2만㎡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2) 시, 군 지역 : 건축비용의 0.5% 이상 0.7% 이하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함	법 제11조 제2항 령 별표1의2
	-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 환경조형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령 제24조 제4항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방법	- 감정, 평가신청 1) 특별시, 광역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2) 그 외의 지역 : 시장, 군수에게	령 제24조의2 제1항
	- 결과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령 제24조의2 제2항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 기능 :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	령 제24조의3 제1항
	- 구성 :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령 제24조의3 제1항
	- 심의 내용 : 미술장식의 가격,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령 제24조의3 제2항
철거, 훼손시의 조치	- 심의 결과 공고 :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	령 제24조의3 제3항
	-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 :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	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위입사항	- 공동주택의 미술장식비용 : 건축비용의 0.1% 이상 0.7% 이하	법 제11조 제2항 령 별표1의2
	- 시, 군지역에 위치하는 기타 건축물의 미술장식비용 : 건축비용의 0.5% 이상 0.7% 이하	법 제11조 제2항 령 별표1의2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령 제24조의2 제3항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령 제24조의3 제4항

의 비용을 '건축비용의 일정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문을 바꾸고 별표에서 0.7%를 상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법은 사라진 셈이 되었다.

둘째, 미술장식물을 설치하여야할 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공동주택에서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이 제외된 반면, 관립집회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속에 관립장이 추가되었고 공공용 시설 중에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추가되었다.

셋째, 연면적 및 건축비용 산정 방식을 축소하였다. 즉,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 변전실과 발전실의 면적이 제외되었으며, 건축비용 산정방식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가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일 경우 표준건축비의 95%를 기준으로 하게 함으로써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였던 조항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타 시설들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를 그리고 시·군지역에서는 0.5~1%의 비율을 설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군지역의 경우 0.5~0.7%로 축소하고, 그 밖의 지역은 연면적이 20,000㎡ 이하면 0.7%, 20,000㎡ 이상이면 20,000㎡까지는 0.7%,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또한 전체적으로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인 보완을 도모하였다. 기존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 절차와 평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설치에 따른 감정, 평가 신청 및 이에 대한 결과 통보 등을 조문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심의내용, 심의결과 공고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미술장식의 철거 훼손 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미술장식이 철거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건축주에게 귀책의 사유가 없지 않은 한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점은 미술장식품의 사후 관리에까지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III. 경기도의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리 절차

현재 경기도내 25개 시, 6개 군은 모두 미술장식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주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의 형태로 되어 있다. 년도별로는 1997년에 19개, 1998년에 6개, 1999, 2000, 2001년에 각각 2개씩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다(http://laib.mogaha.go.kr 참조).

그런데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속에서 미술장식품제도는 전문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2000년 10월 23일에 동법시행령도 전문개정 되었으므로 각 지자체의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시와 가평, 양주, 여주, 포천군 등 8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포, 수원, 이천, 평택, 하남, 화성시와 양평군 등 7개 시·군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시행령에서 바뀐 내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5개의 시·군이 개정된 시행령과 다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장식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크게 보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시행령에서는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증축할 경우 해당 건물의 용도가 표 2에 나와 있는 9가지 범주일 경우에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술장식품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0.1~0.7%, 기타 건축물의 경우는 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나 군에 한해 0.5~0.7% 범주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하게끔 하고 있다.

경기도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6개 지자체에서 0.1%를, 22개 지자체에서 0.1% 이상의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0.1% 이상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미술장식에 투입하려는 것이 건축주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본다면 경기도내 90%가 넘는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기준인 0.1%를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는 0.2% 이상, 안산시는 0.3% 이상, 그리고 안양시는 5만㎡ 이하까지 0.2%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술장식품의 비용을 높이 설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이외의 기타 건축물의 경우는 21개 지자체에서(67.7%) 0.5% 또는 0.5% 이상의 비율을 적용해 하였으며, 안산시가 0.6% 이상, 부천시가 0.7%, 성남시와 안양시가 2만㎡ 이하까지 0.7%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0.5%를 적용하고 있고, 구리, 남양주, 이천, 평택, 화성시와 가평군에서는 개정되기 이전 비율인 1%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 2.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해당 지자체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설치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하였다.

### 1) 설치작품 심의신청

심의신청시기는 크게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게 하는 경우와 건축허

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게 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경우 과천시를 포함한 총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고양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는 현상공모당선작은 심의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 2) 작품의 설치확인

안산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설치확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용승인 신청시 같이 신청을 받아 사용승인 검사와 동시에 작품설치를 확인하고 있다. 안성, 안양, 용인시에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 시점 이전에 설치확인을 하고 있다.

### 3) 가격결정 관련

일반적으로 작품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시흥, 용인, 파주시의 경우에는 가격결정에 대한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으나 위원회의 심의 내용 속에 작품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지자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기타 도시미관의 기여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게 하였다.

고양시를 비롯한 24개 시·군은 이러한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리, 남양주, 화성시와 가평, 양주, 연천, 포천군 등 7개 지자체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기능

광명시를 비롯한 군포, 동두천, 수원, 시흥, 안성, 오산, 의왕시 등 8개 지자체는 시행령과 동일한 심의항목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시·군에서는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공공성, 안전성, 보존성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주된 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6인 이내(이천)에서부터 13인 이내(부천, 안양)까지 다양한데 10인 이내(고양시 등 9개)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11인 이내(동두천, 성남, 수원, 용인)이다. 광주시와 안산시, 그리고 안성시는 심사위원뱅크제를 운영하여 매년 7인(광주, 안성) 또는 10인(안산)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지난번에 비해 심의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행령에서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조례에 반영이 된 것은 동두천 등 8군데이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광주시 등 4개 시·군에서는 시민대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결과 공고

심의 결과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군포시 등 5개 자치단체에서만 이를 명시하였고 나머지 지자체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동두천시 등 9개) 또는 3년(고양시 등 13개)이며 대부분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회 해촉, 간사,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부천시의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 부천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공미술의 본질에 부합되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 4. 철거·훼손시의 조치

이 조항은 이전 조례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인데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술장식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 시에 지자체에서 원상 회복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하였다.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 조례 또는 시행규칙(부천)으로 명문화하였다. 특히 군포와 의왕시에는 원상회복이나 철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였으며 부천, 안양, 용인시에서는 시행규칙에 건축주로 하여금 미술장식품 관리대장을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IV. 경기도의 미술장식품 현황 분석

경기도에는 2001년 12월 1일까지 총 485점의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 109점(22%), 수원시 61점(13%), 용인시 47점(10%), 고양시 44점(9%), 부천시 41점(8%) 순으로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의 62%를 점하고 있는 반면, 동두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건물용도

전체 485개의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인 경우가 264개 54.4%, 업무시설인 경우가 133개 27.4%로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 숙박, 위락,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건물 용도에 따른 연도별 미술장식품 설치현황(경기도)  
(단위: 개소)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건물용도									
공동주택					4	54	74	132	264
근린생활시설						2		1	3
판매 및 영업시설		3	7	18	15	7	13	2	65
의료시설(병원)					6	8	1	5	20
업무시설	3	1		49	9	18	19	34	133
계	3	4	7	67	34	89	107	174	485

이들을 다시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미술장식품의 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에 집중된 것은 분당신도시 개발이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듬해인 1998년의 외환위기 이후 미술장식품의 수가 급감하였으며 이후 1999년부터 수원과 일산 등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2. 작품의 유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미술장식품의 유형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로 크게 나뉘어진다.

작품의 유형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조형예술물의 수가 475점 98%에 이를 만큼 환경조형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각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399점, 82.2%), 그 다음이 회화로서(74점, 15.2%) 조각과 회화가 경기도 지역의 미술장식품의 주류를 이루었다.

년도별로 살펴볼 때,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회화보다는 조각작품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이 시기의 미술장식품이 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었고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주로 조각작품이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경관의 다양성 제고란 측면에서, 그리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조형예술물

표 4. 작품유형에 따른 연도별 미술장식품 설치현황(경기도) (단위: 개소)

유형	연도	연도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조형 예술물	조각	3	4	4	36	27	83	92	150	399	475
	회화			3	25	6	6	13	21	74	
	공예				2					2	
환경 조형물	벽화				1	1		1		3	10
	분수							1	2	3	
	조형물				3					3	
	폭포								1	1	
계		3	4	7	67	34	89	107	174	485	

뿐만 아니라 환경조형물 또한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고해야할 문제로 파악된다.

설치 작품의 유형을 건물의 용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표 5 참조)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조각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업무시설에는 상대적으로 회화작품이 비중이 높았고 조형물은 비록 3점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두 업무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병원에는 조각과 회화작품 이외에 다른 유형의 작품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작품의 소재

조각의 경우 석재가 45.1%, 금속이 36.3%, 그리고 석재와 금속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14.8%인 것으로 나타나 이 세 가지 유형이 전체 조각작품의 96.2%를 차지하였다. 회화의 경우에는 캔버스를 이용한 경우가 56.8%, 종이를 이용한 경우가 31.1%로 나타나 캔버스를 이용한 경우가 화선지에 비해 1.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연도별로는 1999년 이후 석재의 사용이 다른 재료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석재 중에서도 화강석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산 화강석의 수입 증대에 따른 재료구입의 용이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속소재의 경우는 청동과 스텐레스 스틸이 주로 사용되었고 철도 꾸준히 사용되었다. 이 중 청동은 미술장식품이 활발하게 설치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서

표 5. 건축물 용도별 미술장식품 유형(경기도) (단위: 개소)

유형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병원)	업무 시설	계	
조형 예술물	조각	255	3	52	13	76	399	
	회화	5		10	7	52	74	
	공예					2	2	
환경 조형물	벽화	1		2			3	
	분수	2		1			3	
	조형물					3	3	
	폭포	1					1	
계		264	3	65	20	133	485	



표 6. 연도별 미술장식품 소재 사용의 변화(경기도)  
(단위: 개소)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소재									
석재	1	1	2	11	12	26	40	87	180
금속재	2	2	2	22	12	39	30	36	145
석재 + 금속재		1		2	2	16	15	23	59
목재				1	1				2
캔버스 (회화)			3	15	4	4	2	14	42
종이 (회화)				5	2		10	6	23
기타				11	1	4	10	8	34
계	3	4	7	67	34	89	107	174	485

는 스텐레스 스틸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츰 그 사용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재료는 초기에는 청동, 철, 황동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들과 스텐레스 스틸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1999년 이후부터 재료의 종류가 6가지 이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 V. 개선 방안

현행 미술장식품제도는 3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와 개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어온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미술장식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하위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그리고 제도의 운용에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이 두 측면 중에서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보다 더 원론적이어서 우리나라 환경조형물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는 분명하지만, 운용적인 측면 또한 이를 실제화하여 물리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므로 양자 모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1. 제도의 개선

첫 번째, 더욱 확대된 공공미술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술장식은 근본적으로 공공미술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미술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의 의미는 '개인 소유의 장소에', '개인의 자본으로'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하는 미술장식제도는 개인의 사유지에 공공을 위한 예술작품 설치를 강요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지니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궁극적 취지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이라는 규정은 공공미술의 적용을 단위 건축물에만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장식품으로서의 일차적인 역할 이외에는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란 협소한 개념으로부터 '공공미술'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공공미술은 건축물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의 개념이 아니라 생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24조 4항에는 미술장식이 조형예술물과 환경조형물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 되는 개념정의이자 우리나라 환경조형물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란 용어는 '공공장소에 대한 환경조형'의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미술진흥에서 도시환경개선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의 하나인 것이다. 미술장식은 미술진흥과 도시환경개선이라는 두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고 관념적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를 규정하는 법의 입법 목적이 위와 같다면 운영상의 담론은 자연히 도시환경의 개선보다는 미술진흥의 측면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미술장식품을 선정하는 기준처럼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게 되면 작품의 예술성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보다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작품의 선정이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선행조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미술장식품을 접하는 시민들은 미술장식품의 의의를 미술진흥보다는 도시환경 개선의 측면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정승, 1999: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1). 시민들은 미술장식품이 미술진흥의 도구로 이용되기보다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기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재원과 사용처가 일치되어 있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돈을 내고 자신의 땅에 자신의 건물을 장식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작가와 작품의 선택이 재원의 주체인 건축주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고 실제로 설치된 조형물 또한 건축주의 사적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미술장식품은 건축주 개인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대중들은 이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미술장식품이 개별 건물을 장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닌 예술로서 도시 전체의 문화환경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건축주가 일정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화하여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함목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민간 건축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공미술이라는 명제에 보다 부합되는, 그리고 보다 큰 규모의 재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모인 기금을 전담하여 운용할 기구의 설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시 처음부터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적어도 공공미술이라는 원칙에 보다 부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술장식품을 둘러싼 많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 과정을 통하여 순수미술작품 중심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공공미술 제도로 나아갔다. 최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공공미

술재단의 설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미술장식품의 아이টে를 확대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내에 등록된 485점의 미술장식 중 조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술장식품=환경조각'이라는 고정관념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소재 면에서도 최근 들어서 스텐레스스틸, 미디어, 첨단소재 등 신소재의 도입과 혼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금속재료는 청동에, 석재는 화강석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미술장식은 아직도 건축에 매여있고 순수미술품에 머물러 있으며 특정 재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현대 서구의 공공미술의 개념은 날로 확대되어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까지도 포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의 제도도 현행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개편하고 이 속에 미술장식품,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공원이나 광장 같은 도시 공간시설, 조경시설 등도 공공미술의 제도적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리처드 세라의 '경사진 호'(그림 1 참조)가 철거된 자리에 마르타 슈워츠(Martha Schwartz)가 설계한 공원(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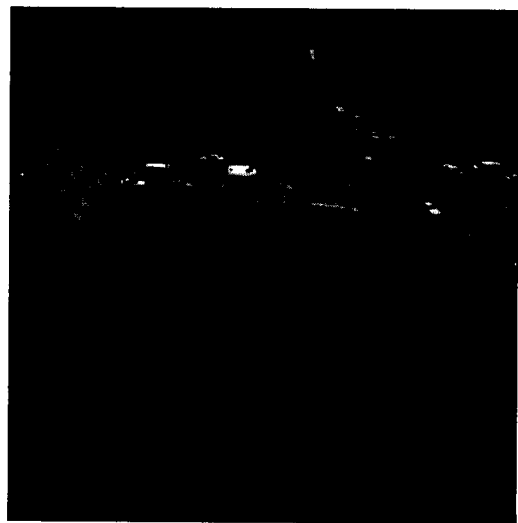


그림 2. Martha Schwartz, Jacob Javitz Plaza, 1995, New York.

자료: Cerver, 1997: 63.

이 조성되었다는 점은 이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2. 지자체 조례의 정비 및 운영의 내실화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지자체의 운영 또한 내실화되어야 한다. 동법시행령에서 건축비용에 대한 미술장식품 비용의 비율, 장식품 설치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에 위임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치 절차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므로 나타났으나 미술장식품비용의 비율과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의 신속한 개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조사를 한 경기도의 경우 2000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2년 반이 다 되어 가지만 8개 시·군은 아직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7개 시·군은 그 사이 조례개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반이나 되는 15개의 지자체가 상위법과는 다른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상위법의 조항이 바뀔 것으로 인해 조례에서 잘못된 조항 번호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점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할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미술장식품비용의 비율처럼 강제성을 띤 조항들이 조례의 미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보다 강한 규정을 조례에서 지정한 셈이 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법의 개정은 사회적인 환경변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하위 법령의 신속한 반영이 요구된다.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구성과 심의내용, 그리고 심의결과 공고인데 이 중에서 심의 내용은 개정 전후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구체적인 변화를 찾기 어렵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현재의 시행령이 전 시행령에 비해 크게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등 8개의 지자체에서만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나마 광주시 등

4개의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를 제외시키고 있고 심의내용의 공고는 군포시 등 5개의 지자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VI. 결론 및 고찰

우리나라 환경조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은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들의 생활공간 속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술장식품은 그것이 공공미술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술장식품의 현황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지역을 사례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미술장식품의 문제점을 구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 보완을 통하여 다듬어져 왔으나 우리나라 미술장식품이 본래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미술 개념의 도입, 둘째, 미술진흥에서도 시환경개선으로의 인식 전환, 셋째, 기금제의 도입, 넷째, 미술장식품의 아이템 확대 등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현행 지자체 조례는 무엇보다도 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맞춘 조례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유형이나 건축비용에 대한 미술장식품비용의 비율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이전제도에 비해서 개선된 점으로 평가받는 미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전문성과 개방성이 도입된 점, 심의결과 공고, 사후관리 조항의 신설로 인한 관리의 내실화 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설치 작품에 있어서도 작품의 유형이 환경조형물에 비해 조형예술물 중심, 특히 조각작품 일변도로

호르고 있으며 작품의 소재 및 재료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장식품의 선택이 전적으로 건축주의 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 하에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위의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될 문제로 판단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미술장식제도와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조형사업,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도시문화환경의 조성을 보다 거시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 각 개별적 사업의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술장식은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시작된 '달리는 지하철 미술관: 와우 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현행 미술장식제도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제도에서는 지하철이 미술장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울러 2002년 광주비엔날레의 'Project 4-폐선부지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전시기간 동안 생활 속의 잉여공간에 대하여 환경조형물, 조형예술물 등을 통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1997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 기획했던 '도시의 꿈-공공미술프로젝트'와 유사한 맥락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미술장식품은 단순히 건물을 장식하는, 전시적인 효과를 위한 미술의 경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환경조형물들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용문헌

1. 김도경(1995)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 예술장식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건축물부설 예술장식품 실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1) 서울시 환경조형물 실태조사: 강남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 문화체육부(1993) 전국환경조형물현황.
4. 성완경(1999) 졸속 퇴출은 위험한 발상(경향신문), 8월 4일.
5. 유석우(1999) 예술이라는 이름의 흉물(경향신문), 7월 28일.
6. 조정승(1999) 도시공간 환경조각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미출판보고서).
7. 최병상(1990) 환경조각, 서울: 미술공론사.
8.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9. Cerver, F. A.(1997) Redesigning City Squares and Plazas, New York: Arco for Hearst Books International.
10. Kelly, M.(1996) Symposium: Public Art - Public Art Controversy: The Serra and Lin Case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4(1) : 12-22.
11. Senie, H.(1989) Richard Serra's Tilted Arc: Art and Non-Art Issues, Art Journal 48(4) : 298-302.
12. Storr, R.(1985) Tilted Arc: Enemy of the People?, Art in America 73 : 90-97.
13. <http://www.visitseoul.net/jsp/korean/dataroom/artmolding/frameMainUsr.jsp>
14. <http://laib.mogaha.go.kr>

원 고 접 수 : 2002년 12월 31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5월 19일  
 3인의명 심사필